

도시재생 기금융자 안내

도시재생, 날개를 달다.
with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존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전면 철거방식은
원주민 커뮤니티 붕괴, 주민간 갈등 유발, 지역고유의 특성 상실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해 왔습니다.
이제 도시의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이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도약합니다.



도시재생, 날개를 달다.

WITH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CONTENTS

도시재생 기금융자 안내	04
도시재생 기금융자 규모	04
도시재생 기금융자 개요	05
도시재생 기금융자 세부안내	
• 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자금	06
• 상가 리모델링자금	08
• 공용주차장 조성자금	09
• 창업시설 조성자금	10
• 가로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11
도시재생 기금융자 프로세스	12
도시재생 기금융자 주요 심사기준	13
도시재생 기금융자 제출서류	14
도시재생 기금융자 상담 연락처	15

01 도시재생 기금융자 안내



도시재생의 정의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

※ 관련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년 6월 제정)

HUG의 도시재생 기금융자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기금융자상품 운용으로 사업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근거법령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2항 제2호

제9조(기금의 용도) ② 기금의 도시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제2호 바목 가로주택정비사업
2. 다음 각 목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출자·투자 또는 융자
 -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

02 도시재생 기금융자 규모



구 분	'17년 예산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	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자금
	상가 리모델링자금
	공용주차장 조성자금
	창업시설 조성자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초기사업비)
합 계	380억 원

03 도시재생 기금융자 개요



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자금

- 사업내용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에 필요한 자금 융자
- 신청자격 개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법인,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 자금용도 건설, 매입, 리모델링
- 융자한도 총사업비의 70%(단, 담보한도 이내)
- 융자내용 연 1.5%(변동금리), 5년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

상가 리모델링자금

- 사업내용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쇠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개별점포 또는 집단적 상가 리모델링 및 건설에 필요한 자금 융자
- 신청자격 상가소유자, 토지소유자
- 자금용도 건설, 리모델링
- 융자한도 총사업비의 70%(단, 담보한도 이내)
- 융자내용 연 1.5%(변동금리), 5년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

공용주차장 조성자금

- 사업내용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또는 주차장이 부족한 원도심 상권지역 내에서 공용주차장, 주차복합시설 등 건설에 필요한 자금 융자
- 신청자격 주차장부지 소유자,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 자금용도 건설
- 융자한도 총사업비의 70%(단, 담보한도 이내)
- 융자내용 연 1.5%(변동금리), 5년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

창업시설 조성자금

- 사업내용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쇠퇴도심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신규로 창업하는 시설 조성에 필요한 자금 융자
- 신청자격 청년창업자 등 개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 자금용도 건설, 매입, 리모델링
- 융자한도 총사업비의 70%(단, 담보한도 이내)
- 융자내용 연 1.5%(변동금리), 5년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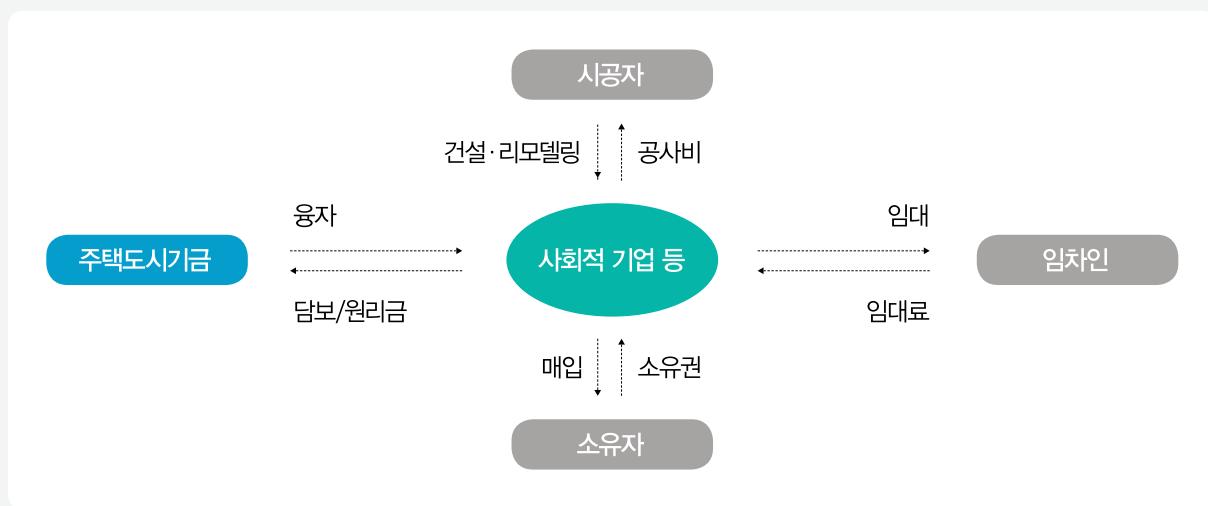
가로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 사업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등에 대한 초기사업비 융자
- 신청자격 가로주택 정비사업조합,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자금용도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인가 이전까지의 초기사업비
- 융자한도 구역별 3억원
- 융자내용 연 2.0%(변동금리), 3년 만기일시상환

04 도시재생 기금융자 세부안내



04-1 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자금



▣ 융자 신청인 자격

- 코워킹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는 개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법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자금용도

- 건설·매입·리모델링

▣ 융자기간

- 5년(1회 연장 최장 10년)
※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경우 2회 연장 최장 15년

▣ 융자이율

- 연 1.5%(변동금리)

* 용어 설명

- **코워킹커뮤니티시설** :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업무, 문화집회, 교육연구, 판매·숙박, 근린생활시설, 주택 등이 동일건축물 내 복합활용 목적으로 함께 운영되는 시설
- **마을기업** : 「도시재생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자치부, 2017)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지자체장)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법인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예비사회적 기업 포함)
-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신고 확인증 등을 통한 협동조합 등 사업조직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지방자치단체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

▣ 융자한도

- 총사업비의 70%(단, 담보가액 이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융자약정 체결 이후 약정을 위반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

융자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징수

▣ 융자조건

- 사업계획상 코워킹커뮤니티시설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시설임대 시 융자 특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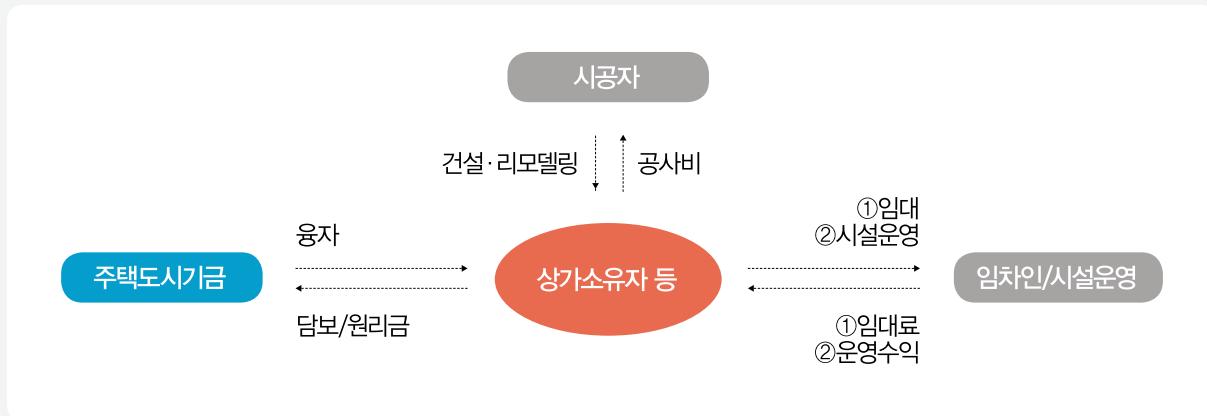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계약갱신권 보장

② 융자실행일로부터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후 5년까지(융자금 중도상환 시에도 융자실행일로부터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후 5년까지) 임대료 인상을 연 5% 이내 제한

③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또는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른 적용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④ 시설임대 시 위 융자조건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함
※ 임대차계약서에 상기 ① 내지 ④에 해당하는 내용을 명시

04-2 상가 리모델링자금



▣ 융자 신청인 자격

- 상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상가소유자 또는 상가 신축을 추진하는 토지소유자

▣ 자금용도

- 상가 리모델링 또는 건설

▣ 융자기간

- 5년(1회 연장 최장 10년)

▣ 융자이율

- 연 1.5%(변동금리)

▣ 융자한도

- 총사업비의 70%(단, 담보가액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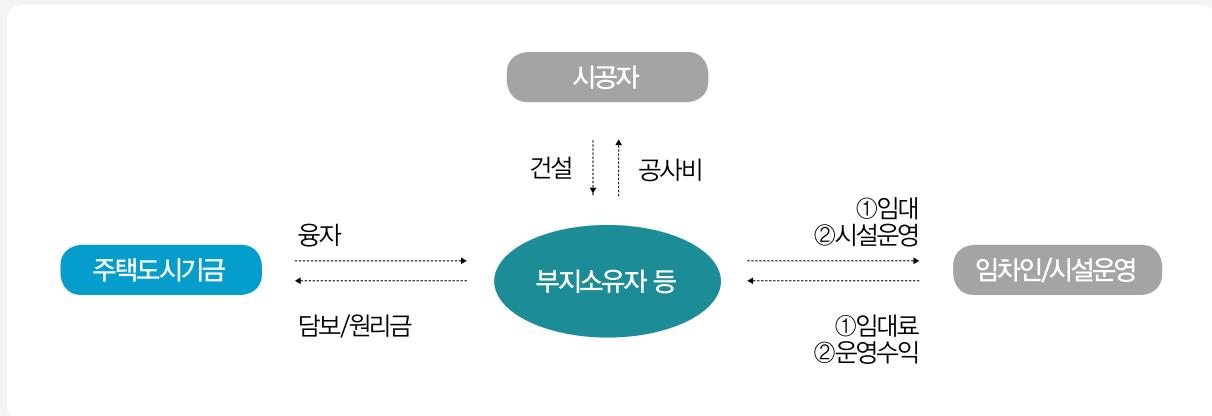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융자약정 체결 이후 약정을 위반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
융자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징수

▣ 융자조건

- 임차인 또는 소유자로부터 리모델링에 대한 동의를 받아 공사소정양식에 의한 동의서 제출 요함
- 시설임대 시 융자 특칙
 -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계약갱신권 보장
 - ② 융자실행일로부터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후 5년까지(융자금 중도상환 시에도 융자실행일로부터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후 5년까지) 임대료 인상을 연 5% 이내 제한
 - ③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또는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른 적용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 ④ 시설임대 시 위 융자조건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함
※ 임대차계약서에 상기 ① 내지 ④에 해당하는 내용을 명시

04-3 공용주차장 조성자금



▣ 융자 신청인 자격

-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 주차장부지 소유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자금용도

- 주차장 또는 주차복합시설 건설

▣ 융자기간

- 5년(1회 연장 최장 10년) ※ 단,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경우 2회 연장 최장 15년

▣ 융자이율

- 연 1.5%(변동금리)

▣ 융자한도

- 총사업비의 70%(단, 담보가액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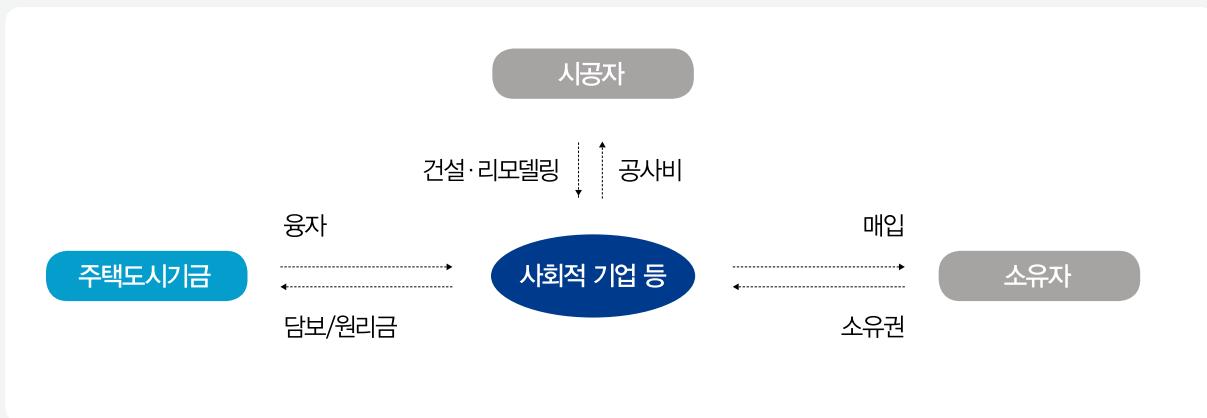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융자약정 체결 이후 약정을 위반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 융자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징수

▣ 융자조건

- 주차장 운영 시 주변시세 이하로 주차료를 책정하여야 함
- 시설임대 시 융자 특칙
 -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계약갱신권 보장
 - ② 융자실행일로부터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후 5년까지(융자금 중도상환 시에도 융자실행일로부터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후 5년까지) 임대료 인상을 연 5% 이내 제한
 - ③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또는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른 적용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 ④ 시설임대 시 위 융자조건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함
 - ※ 임대차계약서에 상기 ① 내지 ④에 해당하는 내용을 명시

04-4 창업시설 조성자금



▣ 융자 신청인 자격

- 신규 창업하는 청년창업자 등 개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 용어 설명

-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호, 제2호의 2에 따른 창업자(창업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재창업자

▣ 자금용도

- 건설·매입·리모델링

▣ 융자기간

- 자금 : 5년(1회 연장 최장 10년)

▣ 융자이율

- 연 1.5%(변동금리)

▣ 융자한도

- 총사업비의 70%(단, 담보가액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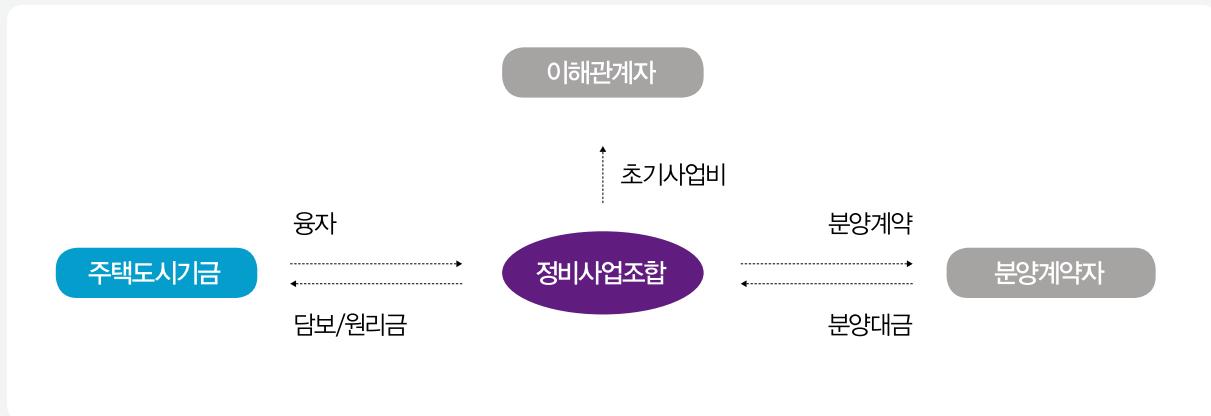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융자약정 체결 이후 약정을 위반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
융자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징수

▣ 융자조건

- 창업시설은 시설임대 할 수 없음

04-5 가로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 융자 신청인 자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바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자금용도

-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인가 이전까지의 초기사업비(조합운영비, 용역비, 총회비용 등)

▣ 융자기간

- 3년

▣ 융자이율

- 연 2.0%(변동금리)

▣ 융자한도

- 구역별 3억원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융자약정 체결 이후 약정을 위반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 융자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징수

▣ 융자조건

-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융자 거절됨
 - 단위사업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신청반려처분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융자신청 당시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융자금 실행 및 자금관리를 위한 계좌는 공사와 조합의 공동명의로 개설하여야 함:
단,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 사업비대출을 통한 자금차입, 이율 및 그 상환방법에 대한 종회결의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05 도시재생 기금융자 프로세스



01 융자상담

- 전화상담 : 주택도시금융2센터, 도시재생뉴딜지원단, 콜센터(1566-9009)
- 방문상담 : 주택도시금융2센터, 각 영업지사
※ 도시재생 기금융자 상담 연락처 참고

02 융자신청접수

- 융자신청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식은 하단 홈페이지 참고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http://www.khug.or.kr/>) 고객지원센터 → 보도자료/공지사항 → 공지사항
 -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 고객서비스 → 공지사항
- 융자신청 서류접수 : 주택도시금융2센터, 각 영업지사 방문접수

03 융자심사

- 융자조건 심사
 - 공공성·실현가능성·사업성 등
 - 담보적격성
- 융자심사 결과통지

04 약정체결

- 상품유형별 융자조건에 따른 권리의무사항 등 약정체결

05 융자실행

- 차주신청에 의한 융자 일괄(분할) 실행

06 사후관리

- 이자납부 연체관리, 원금상환 기일 등 관리
- 융자조건 이행여부 점검

06 도시재생 기금융자 주요 심사기준



구 분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	기로주택 정비사업
신청인 적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지원 금지사유 해당여부 ● 융자약정 위반 경력이 있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지원 금지사유 해당여부 ● 융자약정 위반 경력이 있는지 여부
공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정 금융지원 사업 해당여부 ● 사행산업(도박·사치·향락 등), 건강유해 우려 등 국민정서상 융자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해당여부 ● 기금 이중지원 여부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은 제외) ● 시설임대 시 임대기간 및 임대료 관련 융자 조건 준수의사가 표시되었는지 여부 (코워킹커뮤니티시설, 상가리모델링, 공용주차장 조성자금 융자에 한함) ● 사업계획상 코워킹커뮤니티시설을 포함 하는지 여부 (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자금 융자에 한함) ● 주차장 운영계획상 주변시세 이하로 주차료 책정여부(공용주차장 조성자금 융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정 금융지원 사업 해당여부 ● 기금 이중지원 여부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은 제외)
사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조달계획이 구체적인지 여부 ● 융자 상환계획이 구체적인지 여부 ● 담보력 적정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자금액이 담보인정가액 이내인지 여부 - 담보물 권리침해여부 등 채권보전상 위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조달계획이 구체적인지 여부 ● 융자 상환계획이 구체적인지 여부 ● 담보력 적정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자금액이 담보인정가액 이내인지 여부 - 담보물 권리침해여부 등 채권보전상 위험 여부
실 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허가 진행현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등에 관한 무효 또는 취소 소송 진행 여부 ●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관련 주무관청으로부터 반려·취소처분이 있었는지 여부 ● 본 차입관련 총회의결을 득하였는지 여부

07 도시재생 기금융자 제출서류



구 분	서류내용	비 고
수 요 자 증 심 형 재생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자신청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신청자 자필로 작성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 마을기업 지정서 사본,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협동조합 신고확인증 사본 등 ● 지방자치단체장의 융자대상 확인서 	공사소정양식 공사소정양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사소정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 (건설·리모델링인 경우)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 (매입인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 계약이 기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제출 	공사소정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건물, 공사보증서 등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 부동산 담보제공서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 등 담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발급용), 토지조서, 매매계약서, 매매 대금납부영수증, 토지사용승낙서 등 •한국감정원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사본 (감정평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자한도 제외한 심사결과 적정시 공사가 의뢰(융자신청인 비용부담으로 감정평가 의뢰 가능) •(주택, 상가건물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 융자신청 및 그 내용(자금차입, 이율, 상환방법 등)에 대한 총회 결의서 사본 	공사소정양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공사소정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보증서 등 	
가로주택 정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 융자신청 및 그 내용(자금차입, 이율, 상환방법 등)에 대한 총회 결의서 사본 	공사소정양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공사소정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보증서 등 	

08 도시재생 기금융자 상담 연락처



소속	연락처	주소
주택도시 금융2센터	02-3771-6572	(07237)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1, 1층
	02-3771-6573	
	02-3771-6575	
	02-3771-6576	
	02-3771-6577	
서울북부지사	02-397-2716	(03188)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5, 관정빌딩 5층
	02-397-2717	
서울동부지사	02-2050-7836	(0621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6, 역삼아이타워 2층
	02-2050-7839	
서울서부지사	02-6299-4911	(07325)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KTB빌딩 18층
	02-6299-4912	
서울남부지사	02-6009-7973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14, 정보통신공제조합 5층
	02-6009-7972	
부산울산지사	051-922-7782	(48732) 부산 동구 중앙대로 240, 현대해상 14층
	051-922-7781	
대구경북지사	053-210-2911	(42028)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한국교직원공제회관 7층
	053-210-2922	
대전충남지사	042-479-8522	(35233) 대전 서구 둔산북로 56, 한화생명 10층
광주전남지사	062-350-5930	(61964) 광주 서구 시청로 26, 광주도시공사 6층
경기지사	031-8002-7002	(16488)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8, 9층
강원지사	033-902-6603	(26383) 강원 원주시 북원로 2135, NH농협 원주시지부 3층
충북지사	043-913-2020	(28776)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700, 전문건설공제조합 5층
전북지사	063-250-6413	(54949)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3층
경남지사	055-210-3414	(51505)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한국산업은행빌딩 1층
도시재생 뉴딜지원단	02-3771-6263	(07237)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1, 1층
	02-3771-6265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www.khug.or.kr, nhuf.molit.go.kr